

고성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·관리 조례안

(의안번호 제1210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0. 3. 23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부일자 : 2010. 3. 23 | |
|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10. 3. 31 |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|

2. 제정이유

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에서 시·군에 위임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·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의 어려운 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개설·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(안 제1조~제10조)
- 나.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사항(안 제11조~제18조)
- 다.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사항(안 제19조~제22조)
- 라.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사항(안 제27조~제29조)
- 마.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
(안 제30조~제35조)
- 바.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사항(안 제23조~제26조)
- 사.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
(안 제36조~제40조)
- 아.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9. 9. 10 ~ 9. 29

나. 관련법령 및 근거
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시행령
- 『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시행규칙
- 유통산업 발전법
- 행정절차법
- 「도로법」, 「주차장법」, 「건축법」
- 고성군주차장 조례
-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합의 : 관련부서 합의됨
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(상위법과 동일함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에서 시·군에 위임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원활한 관리·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역의 어려운 상권 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” 제15조와 경남도가 2007년 6월 11일 시군에 시달한 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”에는 군수가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·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, 본 조례 제정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안 제출 시기가 늦은 사유는?
- 답 :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맡은 후 당장 시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챙겼습니다.
- 문 : 조례 표준안에 있는 “농어민을 위한 직매장 설치 지원 근거”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?
- 답 : 이번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판매시설을 시장 안에서 만들어 할 수 있으며,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10. 3. 3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